|  |  |  |
| --- | --- | --- |
|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확정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공고**총서공고[2015]15호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확정 업무를 규율하고 기업의 통관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이하 <가격심사확정방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확정에 관한 해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이 공고에서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상 화물 가격을 명확한 수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식에 따라 화물대금 정산가격을 확정하기로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가격책정 방식을 지칭한다. 단지 성분함량, 수입물량의 영향만 받고 수입 시 결제가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 관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한 정산가격이라 함은 구매인이 해당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화물대금 총액을 지칭한다.2.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입화물에 대해 해관은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된 정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1)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매매당사자가 가격책정 공식을 서면으로 약정하였음;(2) 정산가격이 매매당사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과 요인에 의해 결정됨;(3) 화물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격책정 공식에 따른 정산가격 확정이 가능함;(4) 정산가격이 <가격심사확정방법>상의 거래가격 관련 규정에 부합됨.3. 납세의무자는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상의 첫번째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첫번째 화물 수입지 해관 또는 기업 소재지 해관에 등록(備案)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해관은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록(備案)을 완료해야 하며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 해관 등록(備案)표>(상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이하 <등록(備案)표>로 약칭)에 따른다. 등록(備案) 결과는 전국 모든 해관에서 인정받으며 중복하여 등록(備案)할 필요가 없다.화물 수입 시 정산가격의 확정이 가능한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의 경우 납세자는 해관에 등록(備案)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납세의무자는 등록(備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화물수입계약서(장기계약이 있을 경우 장기계약도 제출해야 함.);(2)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식의 기준, 가격 선정기, 정산기한, 할인 등 가격 영향 요인과 수입항, 수입 차수, 수량 등 상황에 대한 설명서류;(3) 기타 관련 서류.5. 해관은 심사를 거쳐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이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備案)표>에 정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확정함을 기재하고;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이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등록(備案)표>에 공고 제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가격심사확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확정함을 개재한다.6.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해관 등록(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해관 등록(備案)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7. 해관에 등록(備案)한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변경된 계약서에 따른 첫번째 화물의 수입 신고 전에 기존 등록(備案)지 해관에서 등록(備案)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해관은 모든 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록(備案) 결과를 발급한다.8. 납세의무자는 등록(備案) 절차를 마친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의 수입 신고 절차 이행 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등록(備案)번호를 정확하게 기재(작성 요구사항은 첨부2 참조)해야 하고 화물 과세가격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9. 화물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산가격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관이 <가격심사확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備案)지 해관의 동의를 득한 후 정산기한을 9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10. 납세의무자는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의 정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정산가격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1.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가 이행 완료된 후 해관은 총 물량에 대한 정산(核銷)을 실시한다. 정산 결과 실제 수입 물량이 등록(備案)한 계약의 총 물량과 큰 차이가 있고 등록(備案)한 상품의 합리적인 과부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관은 <가격심사확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서 조항을 재심사해야 하며 정황에 따라 가격 재확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12. 이 공고 시행 전에 해관총서 2006년 11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관에 등록(備案)하였고 공고 실시 후에도 이미 등록(備案)한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를 계속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 시행 전에 관련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이 공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2006년 11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첨부: 1.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 해관 등록(備案)표 (양식).doc](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E9%99%84%E4%BB%B6%EF%BC%9A1%EF%BC%8E%E5%85%AC%E5%BC%8F%E5%AE%9A%E4%BB%B7%E5%90%88%E5%90%8C%E6%B5%B7%E5%85%B3%E5%A4%87%E6%A1%88%E8%A1%A8%EF%BC%88%E6%A0%B7%E6%9C%AC%EF%BC%89.doc) 2. [수입신고서 작성 요구사항.doc](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2%EF%BC%8E%E6%8A%A5%E5%85%B3%E5%8D%95%E5%A1%AB%E5%88%B6%E8%A6%81%E6%B1%82.doc)해관총서2015년 4월 28일 |  | **关于修订公式定价进口货物审定完税价格有关规定的****公告**总署公告〔2015〕15 号 为规范公式定价进口货物完税价格的审核，便利企业通关，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以下简称《审价办法》）的规定，现将海关审定公式定价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公告如下： 一、本公告所称的公式定价，是指在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货物所签订的合同中，买卖双方未以具体明确的数值约定货物价格，而是以约定的定价公式来确定货物结算价格的定价方式。对仅受成分含量、进口数量影响，进口时不能确定结算价格等的，不属于本公告管理范畴。 按照定价公式确定的结算价格是指买方为购买该货物实付、应付的价款总额。 二、对同时符合下列条件的进口货物，海关以买卖双方约定的定价公式所确定的结算价格为基础审定完税价格：（一）在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前，买卖双方已书面约定定价公式； （二）结算价格取决于买卖双方均无法控制的客观条件和因素； （三）自货物申报进口之日起6个月内，能够根据定价公式确定结算价格； （四）结算价格符合《审价办法》中成交价格的有关规定。 三、纳税义务人应在公式定价合同项下首批货物进口前，向首批货物进口地海关或企业所在地海关提出备案申请，海关自收齐申请材料后5个工作日内完成备案，对符合本公告第一条规定的，出具《公式定价合同海关备案表》（详见附件1，以下简称《备案表》）。备案结果在全国海关互认，无需重复备案。 对于货物进口时能够确定结算价格的公式定价合同，纳税义务人无需向海关申请备案。 四、纳税义务人申请备案需提供的材料包括：（一）进口货物合同（如有长期合同应一并提供）； （二）进口货物定价公式的作价标准、选价期、结算期、折扣等影响价格的要素，以及进口口岸、批次和数量等情况说明；  （三）其他相关材料。 五、海关经过审核，对符合本公告第二条规定的公式定价货物，在《备案表》中注明以结算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对不符合本公告第二条规定的公式定价货物，在《备案表》中注明不符合公告第二条规定，按《审价办法》的相关规定审查确定完税价格。 六、纳税义务人进口公式定价货物，因故未能事先向海关备案的，应在申报进口的同时向海关办理备案手续。 七、经海关备案的合同发生变更的，纳税义务人应当在变更合同项下货物首次申报进口前，向原备案地海关重新备案。海关自收齐材料后5个工作日内出具备案结果。 八、纳税义务人申报进口已备案的公式定价货物时，应当在报关单备注栏中准确填报备案号（填制要求详见附件2），并向海关提供确定货物完税价格所需的相关材料。 九、自货物申报进口之日起6个月内不能确定结算价格，海关根据《审价办法》的相关规定审定完税价格。特殊情况经备案地海关同意，可延长结算期限至9个月。 十、纳税义务人应在公式定价货物结算价格确定后10个工作日内向海关提供确定结算价格所需材料并办理相关手续。 十一、公式定价合同执行完毕后，海关实行总量核销。经核销发现实际进口数量与备案合同总量差异较大，超过备案商品溢短装合理范围的，海关应当按《审价办法》的有关规定重新审核合同条款，并可视情作出重新估价的决定。 十二、在本公告施行前已按海关总署2006年11号公告规定向海关备案，公告实施后拟继续履行经备案的公式定价合同的，应当在公告实施前重新办理相关手续。 本公告自2015年5月1日起施行，海关总署2006年第11号公告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1．[公式定价合同海关备案表（样本）.doc](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E9%99%84%E4%BB%B6%EF%BC%9A1%EF%BC%8E%E5%85%AC%E5%BC%8F%E5%AE%9A%E4%BB%B7%E5%90%88%E5%90%8C%E6%B5%B7%E5%85%B3%E5%A4%87%E6%A1%88%E8%A1%A8%EF%BC%88%E6%A0%B7%E6%9C%AC%EF%BC%89.doc)   2．[报关单填制要求.doc](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2%EF%BC%8E%E6%8A%A5%E5%85%B3%E5%8D%95%E5%A1%AB%E5%88%B6%E8%A6%81%E6%B1%82.doc)  海关总署2015年4月28日 |